

## 6. 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베뢰아국제대학원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구성원을 총장이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구, 여성발전기본법 제17조의2) 공공기관의 성희롱예방 지침에 따라 성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예방대책과 피해자 보호 및 그 절차를 포함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교 학칙의 적용을 받는 자에게 적용되며, 이에는 교수(시간강사 포함), 직원, 학생, 학교의 통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자(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제3조(정의)** ①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성폭력이란 형법 제22장, 제31장, 제32장, 제38장 및 제39조의 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성폭력 범죄 행위를 포함한 개인의 자유로운 성적 결정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모든 언어적, 신체적, 정신적 폭력을 말한다.

②제1항의 성폭력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2호(구 여성발전기본법 제3조4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 업무, 고용 기타 관계에서 교수, 직원 또는 학생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교육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한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인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등의 성폭력을 하거나 기타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교육상 또는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포함한다.

**제4조(기관장의 책무)** 총장은 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성폭력 고충상담창구의 설치·운영, 성폭력 고충처리절차의 마련, 성폭력 가해자 무관용의 원칙 천명, 소속 직원에 대한 홍보, 예방교육 참석, 성폭력 방지 관련 예산 확보 등 성폭력 방지를 위한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성폭력 사건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총장은 매년 성폭력 방지조치 연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고충상담창구)** ①성폭력 예방을 위한 업무의 처리와 소속 교직원의 성폭력 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처리를 위하여 학생처에 성폭력 고충상담창구(이하 “고충상담창구”라 한다)를 두고 조직 내외에 적극 알려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②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성폭력 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담원”이라 한다)을 지정하되, 인사 또는 복무 담당자, 노조 간부 및 직원, 외부 전문가(성폭력, 양성평등)를 포함하여 2인 이상으로 하고, 남성 및 여성 직원이 반드시 각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고충상담원의 성폭력 관련 상담 및 고충 처리 업무 역량강화를 위하여 교육훈련을 지원한다.

③고충상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폭력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상담·조언 및 고충의 접수
2. 성폭력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처리
3. 성폭력 사건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조정에 관한 사항

4. 성폭력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5. 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 기타 성폭력 예방 업무
- ④고충상담창구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 성폭력 고충처리 절차 및 메뉴얼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6조(예방교육)** ①학생처장은 매년 초에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교육시기·내용·방법 등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총장의 결재를 득한다.

②성폭력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교육 등의 방법으로 1시간 이상 실시하되, 최소 1회는 대면교육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폭력 관련 법령 및 남녀차별금지기준
2. 성폭력 발생 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4. 성폭력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5. 민원인, 고객 등에 의한 성폭력 예방과 발생 시 대처 방안
6. 기타 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등

③신규 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학생처장은 성폭력 예방교육 효과 제고를 위하여 고위직 관리자대상 별도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신입생에게는 오리엔테이션 등을 통해 성폭력 예방교육을 시킬 수 있다.

⑤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에 학생처장은 교육 일시 방법, 교육 참석자 명단, 교육 내용, 교육 사진, 강사 프로필 등에 관한 실시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고충신청)** ①성폭력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거나 성폭력 고충의 처리를 원하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은 서면, 전화, 통신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창구에 고충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 규정에 의한 고충의 신청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제8조(상담 및 조사)** ①고충상담원은 성폭력과 관련하여 상담·고충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조사는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 안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해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 법령에 의해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중이거나, 피해자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때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④조사 과정에서 위원회는 사안과 관계된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부서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또한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⑤성폭력 피해자를 조사할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을 진지하게 경청하여 한다.

⑥성폭력 사건 조사 진행상황을 피해자에게 서면, 전자우편, 유선 등 방법을 통해 알려주어야 한다.

**제9조(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 ①총장(인사·복무 등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자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총장은 피해자의 피해를 주장하는 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행위자와의 업무분장과 업무공간을 분리하는 등 피해자의 신변을 보호해야 한다.

③성폭력 사건 발생 시 피해자 치료 지원, 가해자에 대한 인사 조치 등을 통해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의 근로권·학습권 등을 보호하여야 한다.

④고충상담원 등 성폭력 고충과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자는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사안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에 대하여 이를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⑤사건 처리를 위한 조사 등의 절차는 공개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조사결과와 보고)** ①학생처장은 성폭력 사안에 대한 조사의 완료 즉시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총장은 성폭력 사안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토의에 부처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성폭력 사안의 처리와 관련하여 총장이 부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소속 기관의 장 혹은 기관장이 지명하는 자가 되고,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원 중 2명 이상을 외부 성폭력 방지 관련 전문가를 위촉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의 경우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이 되고, 기타 위원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위촉위원의 선임 기준은 시행세칙에서 정한다. <개정 2017. 1. 1>

**제12조(위원회의 직무)** 위원회의 업무를 다음과 같다.

①성폭력에 관련된 예방대책 수립 및 사건의 처리

②사안의 조사·중재 및 조사결과에 따른 징계요청

③사건의 재발방지 및 피해자 보호대책 수립

④가해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내용 결정

⑤사건의 적절한 해결을 위한 필요한 조치 및 기관장이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

⑥피해자 보호 <개정 2017. 1. 1>

**제13조(위원회의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성폭력의 사건 처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 밖의 사안은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 위원 중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신고인은 특정위원 기피 신청이 가능하고 해당위원은 회피할 수 있다.

④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14조(신고 및 위원회 회부)** ①피해자나 그 대리인 또는 제3자는 고충상담실에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인은 피해자와 동등한 보호를 받는다.

②피해신고는 전화, 통신, 서면 혹은 방문 등의 방법으로 하며 제3자 신고의 경우에는 서문 또는 방문으로 한다.

③고충상담원은 피해신고를 받는 즉시 상담, 조사 및 피해자 보호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④상담, 조사 후 심의가 필요한 경우 상담원은 조속한 시일 내에 위원회에 사건을 회부한다.

⑤피해자가 사건을 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경우, 상담원은 일차적으로 중재작업 및 조치를 취하고 사후에 위원회에 보고한다.

⑥피해자가 사건의 공식처리를 원하지 않으나 조정을 원하는 경우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15조(심의·의결)** ①위원회 위원장은 보고된 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조속히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사건관련자(피해자, 가해자, 참고인)를 소환하여 보고된 사건의 진위여부를 직접 조사할 수 있으며 중재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피신고인의 행위가 성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한다.

④위원회는 피신고자에 대한 징계요구를 포함하여 사건의 처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에 관해 심의·의결한다.

**제16조(징계 및 조치)** ①위원회는 징계가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 해당 징계권자에게 징계를 요구하여야 한다. 징계권자는 위원회의 요구가 있으면 즉시 해당 징계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교수 및 교직원은 교원인사징계위원회, 학생은 학칙 제44조에 의한 징계처리).

②성폭력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근로권, 학습권 등에 대한 추가 피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자를 엄중 징계한다.

③위원회는 가해자가 재범이거나 위원회의 조치를 불이행할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유형, 무형의 보복을 가할 경우 가중 징계를 요구하거나 발의할 수 있다.

**제17조(재발방지조치 등)** ①총장은 성폭력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재발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한다.

②필요한 경우 부서전환,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조치는 피해자 및 조사 등에서 협력하는 자에게도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③지침 제14조 제1항 및 제2항, 제15조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위반 성폭력 사안의 처리 후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